

단, 이 사항은, 2개월 이내의 계약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 근무를 시작한 후 14일 이내의 시험계약 기간 중인 사람, 일용직인 사람(1개월 넘게 계속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임금의 지불

임금은, 1)통화로, 2)노동자에게 직접, 3)전액을, 4)매월 1회 이상, 5)일정기간을 정해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불 임금을 청구한 이후로부터 7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시간외, 휴일, 심야의 노동과 할증임금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시간외, 휴일, 심야에 노동을 시킬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할증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①법정 노동시간(주 40시간제, 1일 8시간)을 넘게 시간외 노동을 시킬 경우, 통상임금의 25% 이상
  - ②휴일(법률로 정해진 1주 1회 이상, 혹은 4주간에 걸쳐 4일 이상의 휴일)에 노동을 시킬 경우, 통상임금의 35% 이상
  - ③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사이)에 노동을 시킬 경우, 통상임금의 25% 이상.
- 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사이에 시간외 노동을 시킬 경우에는, 심야노동분 25% 이상을 합하여 합계 50% 이상의 할증임금이 되고, 휴일에 심야 노동을 시킬 경우에는, 심야 노동 25%와 휴일노동분 35% 이상을 합하여 60% 이상의 할증임금이 됩니다.

**(2) 노동기준 감독서**

앞서 기술한 「계약상의 주의」가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일본에는 국가의 기관으로서 「노동기준 감독서」가 설치되어 있고, 코후시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동조건이나 노동환경에 대하여 모르는 사항이나 곤란한 점이 있으면 「코후 노동기준 감독서」에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코후 노동기준 감독서에서는 매주 수·금의 오전 9:00부터 오후 4:00까지의 사이에 외국인 노동자 노동조건 상담원에 의한 노동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포르투갈어·스페인어)

코후 노동기준 감독서

코후시 시모이이다 2쵸메 5-51 전화 224-5611

**(3) (재)야마나시현 국제교류협회**

외국인 상담사업

장 소 야마나시현 국제교류협회 회의실  
 〒 400-0035 코후시 이이다 2쵸메 2-3  
 전화 228-5419  
 개 설 일 매주 수요일  
 개설시간 오후 6:30~오후 9:00  
 상담내용 취업, 생활, 교육, 법률문제 등 무엇이든 상담 가능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등으로 상담 가능

**(4) 공공 직업안정소**

공공 직업안정소는 일을 찾고 있는 사람의 상담에 응해주는 「직업지도」와, 그 사람의 희망에 맞는 일을 찾아내어 취직처를 소개해주는 「직업소개」 등을 공평하게 처리해주는 국가의 기관입니다.

코후 공공 직업안정소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오후 3:00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의 오전 9:00~11:00에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의 통역이 있습니다. 휴일은 매주 토, 일·경축일.

코후 공공 직업안정소에 갈 때에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가지고 갑시다.

코후 공공 직업안정소

코후시 스미요시 1쵸메 17-5 전화 232-6060

